

#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 9월 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정수과장 윤범수)

### □ 제안이유

- 「먹는물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952호, 2008. 3.21. 공포·2008. 9. 22. 시행)되고 「수도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먹는물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제5조 및 제11조)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함.(안 제1조부터 제16조 까지)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수질검사는 정기적·의무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별관련 법규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	
○수도 원수 수질검사가 법에 의한 의무 사항인지 수질검사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도원수 수질검사는 금번 조례에 포함시켜 의무사항으로 정했으며, 원수 수질검사 후 약품을 자동으로 투입 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지하수 수질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2년마다 검사로는 능동적인 대처가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검사주기를 앞당기는 것은 수수료 문제 및 관련법규를 수정하는 문제점 등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사료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62호
의결 년월일	2009. 9. 8. (제154회)

제출년월일 : 2009. 8. 2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먹는물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952호, 2008. 3.21. 공포 · 2008. 9. 22. 시행)되고 「수도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먹는물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제5조 및 제11조)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함.(안 제1조부터 제16조 까지)

#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를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한”을 “제43조에 따른”으로 하고,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에 규정된 원수·정수
2.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먹는물·샘물·먹는샘물·먹는해양심층수·먹는물공동시설
3. 「지하수법」에 규정된 지하수(음용수·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영조 욕수

제7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을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로 하고, “공문서에 의할 수”를 “공문서로 할 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액에 의하고 동규칙”을 “금액에 따르고 같은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납부서”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납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교부신청시”를 “재교부신청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타 법령에 의거”를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료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선

전등”을 “선전 등”으로 하며, “포장등”을 “포장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를 “제1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하며, 별지 제 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제7조 관련)

검사항목수	처리기간	시료 소요량
10개항목 미만	7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10개항목 이상 20개항목 미만	14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2리터 이상
20개항목 이상	20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샘플 및 먹는샘물의 세균학적 검사시료 소요량은 2리터 이상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받 음 :

보 냄 : 부천시장 (인)

제 목 (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시료내용

시 료 명		접수일자/접수번호	. . . /
의뢰자명			
채수장소		채수일시	
검사목적			

2. 수질검사 결과

검사항목	기 준	결 과	검사항목	기 준	결 과
판 정					
비 고					

이 성적은 제시된 시료에 한정함.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관)	(항)	(목)	(관)	(항)	(목)	(관)	(항)	(목)
소관청 : 부천시정수과			소관청 : 부천시정수과			소관청 : 부천시정수과		
수 질 검 사 수 수 료			수 질 검 사 수 수 료			수 질 검 사 수 수 료		
금액: _____ (₩ )			금액: _____ (₩ )			금액: _____ (₩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부천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성명	①		납부자	①		출납금융기관	①	
(납부자)	귀하		출납금융기관	①		(납부자)	귀하	
			기업출납원	귀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43조에 따라 ---- ----- 징수에 ----- -----.</p>
<p>제5조 (검사대상)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대상은 「수도법」 제19조에 규정한 정수,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규정한 먹는물·샘물·먹는샘물·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한 지하수(음용·생활·농업·공업용수), 「공중위생법」 제4조에 규정한 목욕장 욕수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규정한 수영조 욕수에 한한다.</p>	<p>제5조(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도법」에 규정된 원수·정수</li> <li>2.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먹는물·샘물·먹는샘물·먹는해양심층수·먹는물공동시설</li> <li>3. 「지하수법」에 규정된 지하수(음용수·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li> <li>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li> <li>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영조 욕수</li> </ol>
<p>제7조 (수질검사 의뢰)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p>	<p>제7조(수질검사 의뢰) ----- ----- -----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에-----</p>



현행	개정안
<p>제9조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법령에 의거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에는 공무원 및 운전원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기타 기기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제9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 ----- 따라 ----- 한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 그 밖에 ----- .</p>
<p>제10조 (검사성적서의 교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10조(검사성적서의 교부) ① 제7조에 따라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 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자의 원 에 의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p> <p>⑤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 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3호서식</u>"에 의한 <u>재교부신청서</u>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p>제11조 (수수료의 감면) ①국가기 관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 여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에 규정한 수수료 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부천시 관내지역의 지정된 먹 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등) 및 <u>간이상수도</u>의 수질검사</p> <p>3. (생략)</p> <p>②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수 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 료금액의 2분의1을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p>	<p>④ ----- ----- ----- 따라 -----.</p> <p>⑤ <u>제1항에 따라</u>----- ----- --- <u>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u> <u>교부신청서</u>----- -----.</p> <p>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현행과 같음) 2. ----- ----- ----- <u>마을상수도</u>의 -----</p> <p>3. (현행과 같음)</p> <p>②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p> <p>1. (현행과 같음) 2. <u>그 밖에</u> ----- -----</p>

현행	개정안
<p>③<u>타 법령에 의거</u>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③ <u>다른 법령에 따라</u>----- ----- -----.</p>
<p>제12조 (수질검사 등의 불응) (생략)</p> <p>1.~2. (생략)</p> <p>3. <u>제7조의 규정에 의한</u>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 채수 용기가 아닐 때</p> <p>4. (생략)</p> <p>5. <u>기타</u>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p>	<p>제12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u>제7조에 따른</u> ----- ----- -----</p> <p>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 -----</p>
<p>제13조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u>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u> 제출된 시료와 <u>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u>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u>제7조에 따라</u> 제출된 시료와 <u>제8조에 따라</u> ----- ----- -----.</p>
<p>제14조 (검사결과의 광고등 금지) <u>제10조의 규정에 의한</u>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u>선전등에</u>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u>포장등에도</u> 표시할 수 없다.</p>	<p>제14조(검사결과의 광고등 금지) <u>제10조에 따라</u> ----- ----- -----<u>선전 등</u>----- -----<u>포장 등</u>----- -----.</p>

현행	개정안
<p>제15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시장은 검사 의뢰인이 <u>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u></p> <p>②시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환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공고하여야 한다.</u></p>	<p>제15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 <u>제14조에 따라</u> ----- ----- ----- -----.</p> <p>② -----<u>제1항에 따라</u> ----- ----- ----- -----.</p>
<p>제16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p>	<p>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관계 법령 발췌서>

### ○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해양심층수)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원수)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5. "수처리제(수처리제)"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6.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 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하는 기구로서, 유입수(유입수)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8. "정수기품질검사"란 정수기에 대한 구조, 재질, 정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먹는물관련영업"이란 먹는샘물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한다.

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3.2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1>

⑥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1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7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⑧제5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⑨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 수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원수(원수)"란 음용(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한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호소)·지하수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정수)"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

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 (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취수)·저수(저수)·도수(도수)·정수(정수)·송수(송수)·배수시설(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갱생)"이란 관(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 제거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 지하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라 함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라 함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라 함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하수정화업"이라 함은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원상복구"라 함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 제20조 (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6>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 ③ 수질검사의 항목·기준·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 공중위생관리법

-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24조 (안전·위생 기준)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③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